

## ■ 인지세 안내

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며,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계약자께서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.

## ■ 인지세 과세대상과 납부기한·방법

※ 인지세법 제1조,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

구 분	내 용
과세대상	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
납부기한 방법	계약서를 작성 시 계약서별로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인지세를 납부
전자수입인지 구입처	전자수입인지 사이트( <a href="http://www.e-revenuestamp.or.kr">www.e-revenuestamp.or.kr</a> )·우체국·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

## ■ 인지세 가산세

※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

구 分	내 용
법정납부기한 후 3개월 이내	미납세액의 100%를 가산세로 부과
법정납부기한 후 3개월 초과~6개월 이내	미납세액의 200%를 가산세로 부과
법정납부기한 후 6개월 초과	미납세액의 300%를 가산세로 부과

## ■ 유의사항

※ 인지세 15만원(1억원 이상~10억원 이하)을 납입하시고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아파트 계약 시 첨부 및 등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※ 만일 미납부 또는 영수증을 분실 시 기간에 따라 가산세 최고 300%를 납부하여야 하오니 이점 반드시 참고 하시어 납부 후 전자수입인지를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## ■ 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

온라인 이용방법(카드결제, 계좌이체 가능)

- 전자수입인지사이트([www.e-revenuestamp.or.kr](http://www.e-revenuestamp.or.kr)) 또는 네이버 검색창 '전자수입인지' 검색
-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, 비회원 또는 회원 로그인 후 구매



### 3. 구매(납부정보 입력)

구 分	내 용
용도	인지세 납부
과세문서종류	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
금액	150,000원
건수	1건

### 4. 출력

※ 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오프라인 이용방법(신분증 지참, 현금결제만 가능)

- 우체국·은행 방문(방문전 문의 요망)
- 전자수입인지 구매 신청서 작성
- 전자수입인지 발급